

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관리번호			
연 결 모 법 인	①사업자등록번호		②법인등록번호				
	③법인명		④전화번호				
	⑤대표자 성명		⑥전자우편주소				
	⑦소재지						
해 당 사 업 장	⑧명칭		⑨연락처				
	⑩소재지						
⑪연결사업연도 ~		⑫법인종류별 구분	중소 기업	일반기업 중견기업	상호출 자제한 기업	그외 기업	⑬조정구분 []외부 []자기
			30	73	83	93	
⑭신 고 구 분 1. 정기신고, 2. 수정신고(가.서면분석, 나.기타) 3. 기한후 신고 4. 경정청구							
⑮법인세신고일		⑯법인지방소득세 신고일		⑰사업연도의제 []여[]부			

□ 연결집단별 세액의 계산

구 분	법인지방소득세				합 계
	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	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	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		
⑮연 결 수 입 금 액	()				
⑲(연 결) 과 세 표 준					
⑳연 결 산 출 세 액					
㉑총 부 담 세 액					
㉒기 납 부 세 액					
㉓차 감 납 부 할 세 액					
㉔경정·수정신고 등 가감액					
㉕납 부 할 총 세 액(㉓+㉔)					
㉖분 납 할 세 액	㉗신고기간 이내 납부할 세액(㉕-㉖)				

□ 안분율의 계산

㉘ 안분율

구분	종업원 수 (명)			건축물 연면적(㎡)												안분율 (소수점8자리)	
				계			건물			기계장치			시설물				
	법인 전체	시군구 내	비율 (%)	법인 전체	시군구 내	비율 (%)	법인 전체	시군구 내	비율 (%)	법인 전체	시군구 내	비율 (%)	법인 전체	시군구 내	비율 (%)		
법인명																	

□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

㉙ 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

법인명	관계	법인 등록 번호	법인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	법인지방 소득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	납세지별 산출세액	납세지별 세액공제 · 감면액	납세지별 가산세액				납세지 별 추가 납세	납세지별 기납부세액		납세지 별 경정· 수정 신고 등 가감액	탄력세 율 조 정 세 액	해당 납세지에 납부할세액	해당 납세지에 분납할세액	신고기간 이내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세액	본점 소재지 시군구	
							무 (과소) 신고	납부 지연	지방세법 제103조 의30에 따른 가산세	동업 기업 가산세 배분액		기 타	특별 징수 세액							수시 부과 세액
합 계																				

환급금계좌	③⑩금융기관명	③⑪예금주	③⑫계좌번호
-------	---------	-------	--------

신고인은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37 및 「지방세기본법」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.

신고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 (연결모법인 본점신고서)	1.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2. 세액조정계산서 및 부속서류(각 연결법인의 재무상태표, (포괄)손익계산서, 이익잉여 금처분(결손금처리)계산서, 현금흐름표 등 포함)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

신 고 안 내

각 연결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해당 시·군·구청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.

210mm×297mm(백상지(80g/㎡))

작성 방법

- ①사업자등록번호 ~ ⑦소재지, ⑪연결사업연도 ~ ⑮법인세신고일, ⑰사업연도의제 및 ⑱연결수입금액란: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76호의5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.
- 해당사업장란: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, 연락처, 소재지를 ⑧명칭, ⑨연락처, ⑩소재지 란에 각각 적습니다.
※사업장이 많을 경우 납부할 세액이 가장 큰 연결법인의 사업장에 관하여만 적습니다.
- ⑯법인지방소득세신고일란: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일을 적습니다.
- ⑲연결과세표준의 법인지방소득세란: "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44호의2서식)"의 ④란의 금액을,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⑥란의 금액을,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란에는 같은서식 ⑤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- ⑲연결과세표준의 법인지방소득세란: "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44호의2서식)"의 ⑥란의 금액을,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⑧란의 금액을,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란에는 같은서식 ⑦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- ⑳첨가부담세액의 법인지방소득세란: "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44호의2서식)"의 ④가감계란의 금액에서 ㉑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한 금액을,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 ㉒가감계란의 금액을,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란에는 같은 서식 ④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- ㉒기납부세액란: "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44호의2서식)"의 ⑥기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,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③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- ㉓차감납부할세액란: ㉑첨가부담세액에서 ㉒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.
- ㉔경정·수정신고 등 가감액란: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감액을 적습니다.
 - 「지방세법」(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(수정 신고일)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
 - 「지방세법」(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92조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
 - 「지방세법」(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)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
 -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64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
 -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65에 따라 재해손실로 차감된 경우
- ㉕분납할 세액란: "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44호의2서식)"의 ④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- ㉖안분율란은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.
 - 종업원 수: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「지방세법」 제74조제8호 및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.
 - 건축물 연면적: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(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)의 연면적을 적습니다. 다만,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(수조·저유조·저장창고·저장조·송수관·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)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.
 - 안분율: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값(0 이상 1 이하)을 적습니다.

$$\left[\left(\frac{\text{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}}{\text{법인의 총 종업원 수}} \right) + \left(\frac{\text{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}}{\text{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}} \right) \right] \div 2$$

○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이 안분계산을 하지 않거나 안분율을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㉗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
 - 법인명: 각 연결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.
 - 관계: 모법인은 "모", 자법인은 "자"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 - 법인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: 법인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의 총액을 적습니다.
 - 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(표준): 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(표준)의 총액을 적습니다.
 - 납세지별 산출세액: "법인지방소득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"에 ㉘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.
 - 납세지별 세액공제·감면액: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 세액공제·감면액을 적습니다.
 - 납세지별 가산세액: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.
 -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: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 이월과세액과 추가납부세액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이자상당액 합계액을 적습니다.
 - 납세지별 기납부세액
 - 특별징수납부세액: 모법인과 자법인의 특별징수납부세액을 구분하지 않고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.
 - 「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 > 연결집단 전체의 총부담세액 합계」인 경우
 - 모법인의 지점 및 자법인의 본·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=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총부담세액
 - 모법인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=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- 모법인 본점 외 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
 - 「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 ≤ 연결집단 전체의 총부담세액 합계」인 경우
 - 모법인의 지점 및 자법인의 본·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=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× $\frac{\text{해당 납세지의 총부담세액}}{\text{연결집단 전체의 총부담세액}}$
 - 모법인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=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- 모법인 본점 외 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
- 1) 및 2)에도 불구하고 각 연결법인별 특별징수세액을 각 연결법인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납세지별 기납부세액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.
- 수정신고하는 경우 특별징수세액의 총액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적은 기납부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수시부과세액: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 납세지별 수시부과세액을 적습니다.
- 납세지별 경정·수정신고 등 가감액: ㉔ 경정·수정신고 등 가감액에 ㉘ 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: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.

$$\text{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} = \text{과세표준} \times \text{표준세율} \times \text{안분율} \times \left(\frac{\text{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}}{\text{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}} - 1 \right)$$
-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: "납세지별 산출세액 - 납세지별 세액공제·감면액 + 납세지별 가산세액 +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-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± 경정·수정신고 등 가감액 ±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"의 금액을 적습니다.
- 해당 납세지에 분납할 세액: ㉕분납할 세액에 ㉘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신고기간 이내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: "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- 해당 납세지에 분납할 세액"의 금액을 적습니다.
-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㉙금융기관명 ~ ㉚계좌번호를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.